

1.사업의 목적

Art Smoking Booth

사업의 목적

- ✓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를 모두 보호
- ✓ 혐오시설인 흡연부스의 예술적 승화
- ✓ 장애인, 생계곤란 유공자의 일자리 창출

기본방안

- ✓ 최적의 ventilation system
- ✓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물
- ✓ 공공미술 예술 건축물
- ✓ 광고수익을 이용한 자생적인 시설물 관리

2. Art Smoking Booth 사업의 효과

Art Smoking Booth

Art Smoking Booth

Art Smoking Booth

Art Smoking Booth

▶ 국민 10명 중 6명이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고있다.

▶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호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과 공공장소의 금역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의 흡연 권리보호를 할 수있다.

▶ 혐오시설인 흡연부스의 예술적 건축물로 승화 함

▶ 장애인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들의 취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

▶ 친환경적인 배기시스템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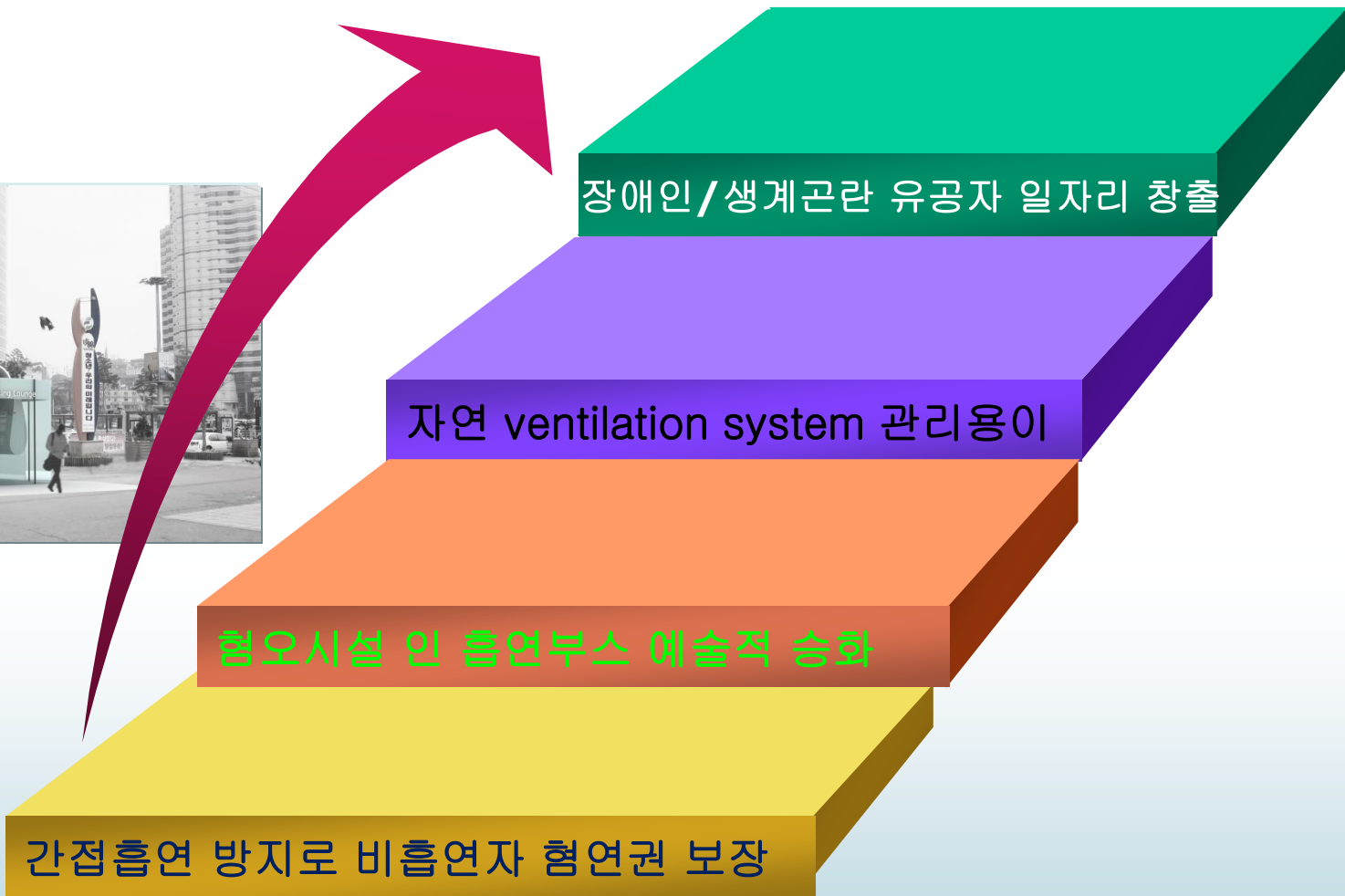
▶ 철저하고 청결한 유지보수 관리로 쾌적한 흡연부스 조성하여 길거리 흡연인구를 유도할수있다

▶ 길거리 흡연인구의 감소로 쾌적한도심거리 조성에 이바지.

SMOKING BOOTH

SMOKING BOOTH

3. Art Smoking Booth 기본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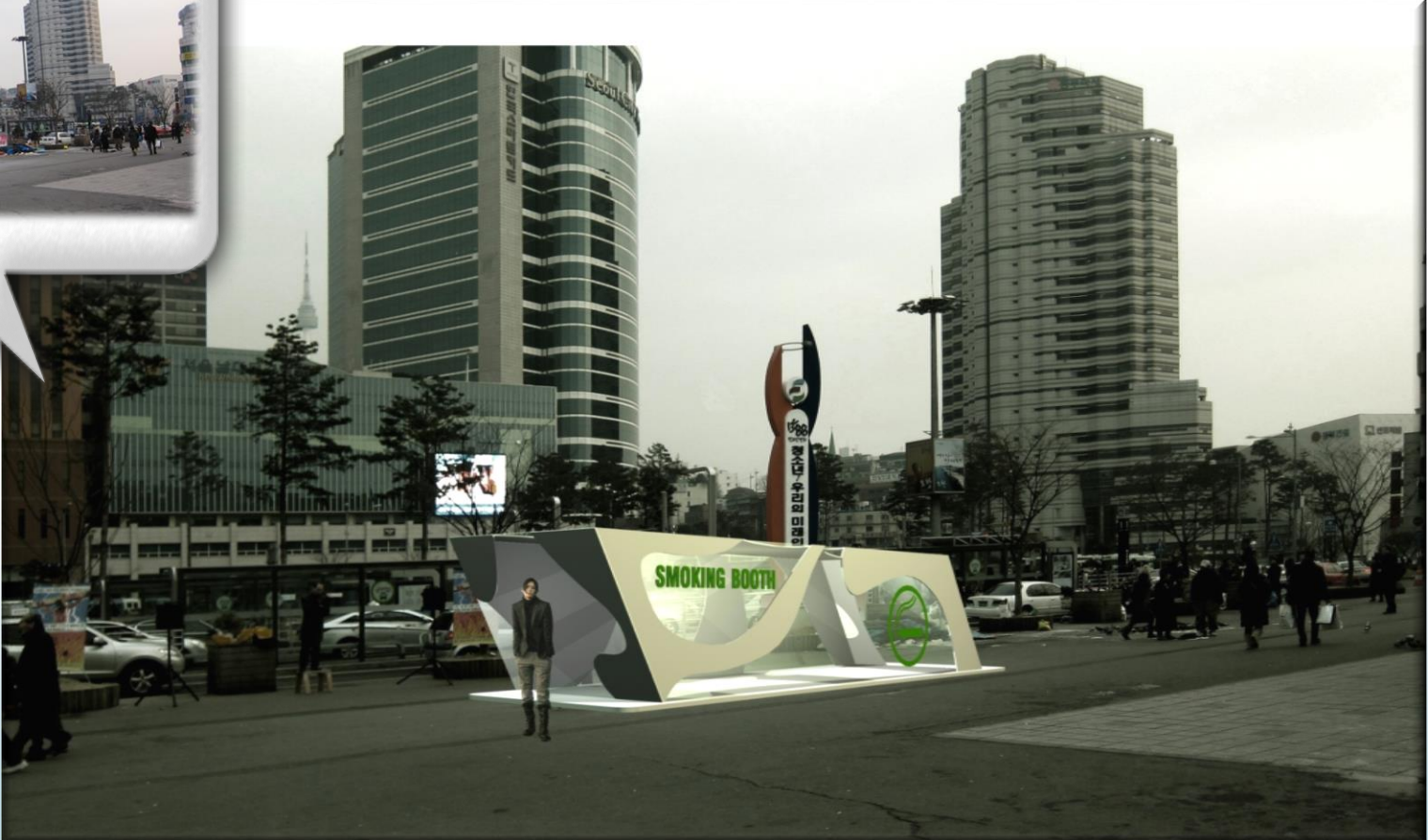


SMOKING BOOTH

SMOKING BOOTH

4.Art Smoking Booth 조감도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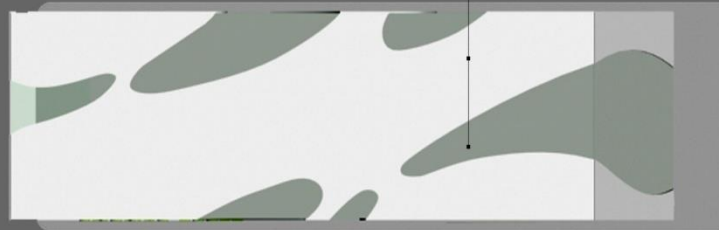
설치 전



SMOKING BOOTH

SMOKING BOO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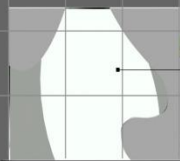
5.Art Smoking Booth 입면도 A



TOP VIEW

- THK 1.2MM GAL 'ST 위 지정 우레탄 도색
- THK12MM 강화유리위 반사필름 부착

Section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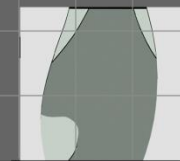
RIGHT VIEW

명판 설치 (황동판 위 글씨부착)



FRONT VIEW

- THK 1.2MM GAL 'ST 위 지정 우레탄 도색
- THK12MM 강화유리위 반사필름 부착
- 싸인물 부착



LEFT VIEW

G.L



SMOKING BOOTH

SMOKING BOOTH

6. Art Smoking Booth 조감도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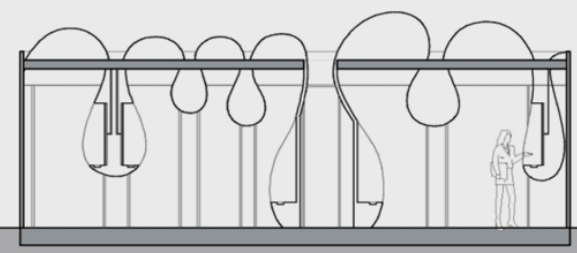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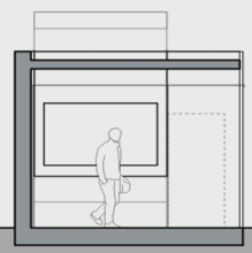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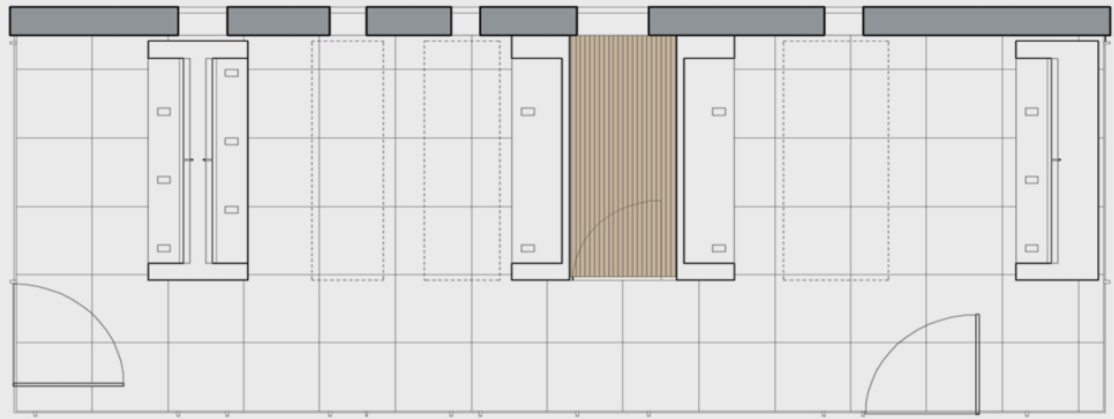
설치 전



SMOKING BOOTH

SMOKING BOOTH

7.Art Smoking Booth 입면도 B



SMOKING BOO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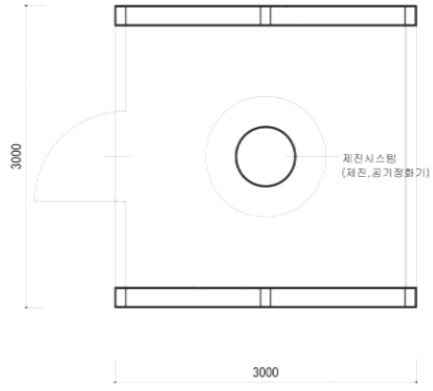
SMOKING BOOTH

8.Art Smoking Booth 조감도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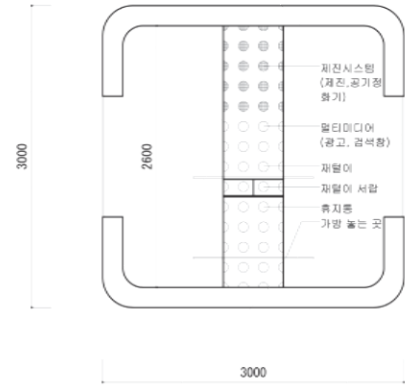
설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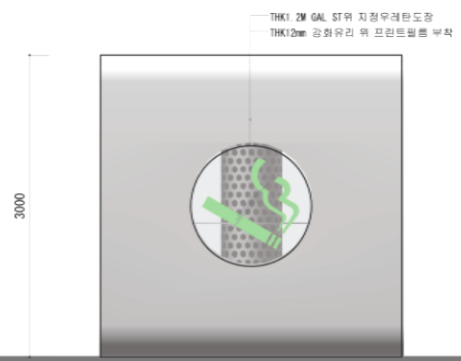
9.Art Smoking Booth 입면도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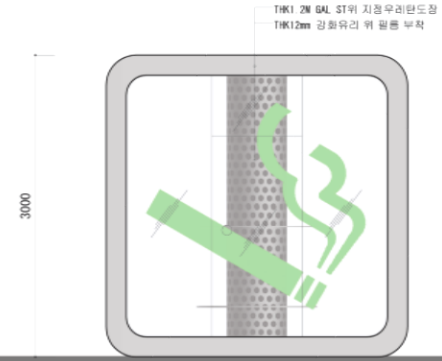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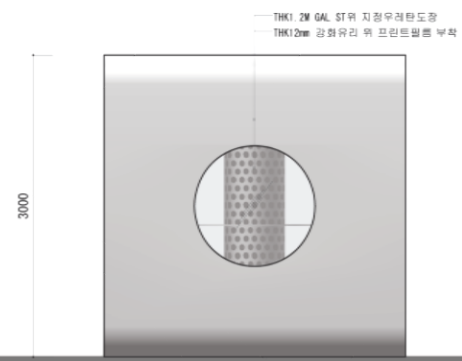
단면도



우측면도



정면도



좌측면도

10.Art Smoking Booth 필요성

●국민건강증진법 의 금연의 강조됨에 따라 금연구역 증가확대 에 비해 흡연부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흡연자 의 권리보장.

(단위 : 개소, 2010. 12.31기준)

계	의료기관	보건소 등	초중고교	보육시설	사무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	공장	공연장	학원	대규모 상점가	지하 상점가
		56,169	2,440	11,587	29,526	15,300	50,080	33,582	550	3,348	1,212
340,638	관광 숙박업소	대학교	체육 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관련시설	목욕장	전자 오락실	PC방	만화방	음식점	청사
	1,858	432	1,164	6,683	4,824	8,593	3,396	21,570	1,033	78,731	8,094

※ 자료원: 금연클리닉정보시스템(보건소 보고기준)

11.Smoking Booth 설치운영안

1 설치 위치

- 대형소핑몰 및 지하철,전철역사 유동인구 밀집지역

2 설치 수량 및 비용

- (1기당 @₩35,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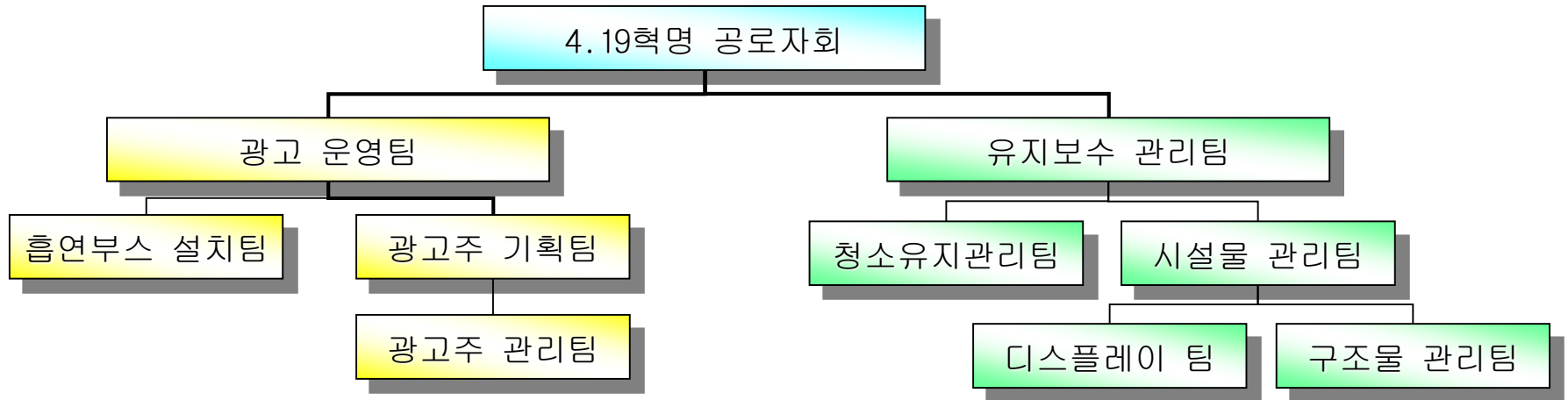
3 설치 조건

- 가. 설치비용 : (주) 회사 전액 부담하며, 디스플레이 면을 이용, 광고주를 유치하여 비용조달
- 나. 시설 관리 운영비 : 기본 시설에 대한 비용은 광고주의 광고료를 받아 4.19혁명 공로자회가 운영하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않음
- 다. 설치 운영 기간 : 시설물 완공일로부터 10년간 설치 운영

4 관리 유지 방안

- 가. 관리 유지 책임 : 4.19혁명 공로자회
 - 나. 보수유지
 - 매일 청소유지관리를 통하여 늘 쾌적한 공간을 유지.
 - 월 2회 전담 수리 요원을 배정, 불편민원 접수 시 24시간내 민원해결
- 4.19혁명공로자회 관리전화번호 명기

12. 운영 조직도



■ 유지 운영 전략

- 이원화 방식으로 전문성 향상
- 민원 발생시 24시간 민원처리 시스템
- 1일 점검시스템으로 쾌적한 시설물관리
- 불만 사항 상시 파악으로 개선 방향 모색

■ 팀별 분담사항

- 팀장 책임 하 모든 사항 관리
- 일일 주간 월간단위 유지보수일지 작성
- 문제 발생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전체 운영 관리팀 회의시 개선방향 모색 제출 (월간)
- 각 팀별 관련 사업팀과 개별 접촉하여 전문성 확보

13. Art Smoking Booth 관련법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시행일 2012.12.8>